



총회대외협력위원회 보고

제107회기 총회대외협력위원회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위원장 박철수
서 기 이도형

1. 조 직

- 위 원 장: 박철수
- 서 기: 이도형
- 총 무: 조대천
- 부위원장: 김영구
- 회 계: 지동빈

2. 회 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2022. 11. 22.(화) 12:00

☞ 장 소: 주다산교회당

☞ 결의사항

①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박철수 목사, 부위원장: 김영구 장로, 서기: 이도형 목사, 회계: 지동빈 장로,
총무: 조대천 목사

② 위원장을 통하여 위원회의 수임 사항과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다.

③ 총회임원회에 필요 시 위원회 활동비의 재정을 청구하기로 하다.

④ 총회총무의 대외 연합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추후 업무분장을하기로 하다.

⑤ 한장총, 한교총의 연합사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위원 2명씩 위 기관에 참여하기
위해 파송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⑥ 차기 회의는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1시,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2022. 12. 2.(금)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총회총무와 대외협력위원회와의 업무분장을 총회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② 한장총 및 한교총 파송 대의원으로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을 교체추천 요청하기로 하다.

③ 한교총 대의원 중 신평식 목사는 한교총 직원이기에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 요청하기로 하다.

④ 총회임원회에서 총회총무와 대외협력위원회 간의 업무분장 허락 후 위원회 관련규정 제정을
검토하기로 하다.

⑤ 연합기관 분담금(한교총, 한장총)은 대외협력위원회와 협의 후 지출할 것을 총회임원회에 요청
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2023. 2. 17.(금) 11:00

☞ 장 소: 더케이호텔 서울

☞ 결의사항

- ① 본 교단 총회대외협력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기로 하고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 ② 총회총무의 대외업무 목록과 총회장 의전 담당 업무 목록을 검토하기로 하다.
- ③ 각 교단의 대외협력 기관의 규정을 수집해서 검토하기로 하다.
- ④ 본 교단이 관계하는 대외기관의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2023. 6. 16.(금) 15: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본 교단 총회대외협력위원회 규정(안)을 별첨과 같이 확정기로 하다.
- ② 한국장로교 4개 교단(합동, 고신, 대신, 합신) 대외협력 관련 간담회(7. 5. 수) 개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참석자에게 여비, 식사, 선물을 제공하기로 하되 예산이 부족한 바 150만 원 추경 청원하기로 하다.
- ③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상임회장 추천은 본 교단에서 추대기로 하되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2023. 7. 19.(수) 15:39

☞ 장 소: 온라인회의

☞ 결의사항

- 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분담금 50,000,000원과 한국교회총연합 제6회기 분담금(11,262 교회 기준 / 1교회당 1만 원) 112,600,000원은 납부하기로 하다.

3. 사업 보고

1) 한국장로교 4개 교단(합동, 고신, 대신, 합신) 대외협력 관련 간담회

(1) 일 시: 2023. 7. 5.(수) 11:00

(2) 장 소: 총회회의실

(3) 참석대상: 4개 교단 총회장 및 총회총무(사무총장)

(4) 진 행

① 1부 예 배: 설교 총회장 권순웅 목사 “하나님께 가까이(시편 73:28)”

② 2부 간담회

가. 주요 사항

a.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하다.

b. 한국교회에 개혁주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기로 하다.

2) 본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의 존치를 위해 내부 규정 제정[별첨 1]

3) 활동 사항

- (1) 2022. 11. 22. 12:00 1차 대외협력위원회의/주다산교회
- (2) 2022. 12. 2. 11:00, 2차 대외협력위원회의/총회회관
- (3) 2022. 12. 6 한국교회연합총회 참석(한기총공동회장)/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
- (4) 2022. 12. 6. 한기총 임원회 참석(한기총공동부회장)/한기총세미나실
- (5) 2022. 12. 8. 11:00, 한교총 총회/100주년기념관
- (6) 2022. 12. 8. 12:00, 한기총 임원회/511호 세미나실
- (7) 2022. 12. 12. 11:00, 한기총 2차 실행위원회
- (8) 2022. 12. 20. 11:0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회의실 508호
- (9) 2023. 1. 6. 10:00, 한교연 임원회
- (10) 2023. 1. 6. 11:00, 한교연 신년하례회/한국교회연합빌딩 3층 대강당
- (11) 2023. 1. 10. 11:00, 한장총 신년하례회/한영대
- (12) 2023. 1. 12. 11:00, 한교총 신년하례회 및 공로자 시상식/ccmm빌딩
- (13) 2023. 2. 13. 한기총 정기총회/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대강당
- (14) 2023. 2. 17. 11:00, 3차 대외협력위원회의/더케이호텔
- (15) 2023. 2. 21. 10:30, 총회총무 간담회
- (16) 2023. 2. 24. 14:00, 한장총 통일 이후 북한 선교 사역 관련, 각 교단의 북한 사역 관련 간담회/여전도회관 리루이스홀
- (17) 2023. 3. 3. 14: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 (18) 2023. 3. 9. 10:30, 한교연 부활절 행사/서울롯데호텔 2층
- (19) 2023. 3. 13. 10:30, 한장총 교회부흥위원회/더복있는교회
- (20) 2023. 3. 28. 10:00, 제5회 한국교회연합 친선볼링대회/락온볼링
- (21) 2023. 3. 30. 11:00, 한기총 1차 실행위원회/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
- (22) 2023. 4. 3. 07:00, 통합교단 대외협력위원장 유명모 목사 간담회/워커히
- (23) 2023. 4. 6. 11:00, 한교연 제12-4차 임원회/한국기독교연합회관 회의실 508호
- (24) 2023. 4. 13. 11:00, 한교연 임원간담회/주님의사랑 세계선교센터
- (25) 2023. 4. 13. 14:00, 한장총 다음세대위원회
- (26) 2023. 4. 20. 11:00, 한기총 34-1차 임시총회/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
- (27) 2023. 5. 9. 14:00, 한장총 교회부흥위원회/한장총 회의실
- (28) 2023. 5. 12. 11:00, 한교연 제 12-5차 임원회/한교연회의실 508호
- (29) 2023. 5. 22. 11:00, 한기총 제34-2차 임원회 소집/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의실
- (30) 2023. 6. 15. 14:00, 한장총 다음세대위원회 간담회/한국기독교교회관 509호
- (31) 2023. 6. 16. 15:00, 4차 대외협력위원회의/총회회관
- (32) 2023. 7. 5. 11:00, 한국장로교 4개 교단(합동, 고신, 대신, 합신) 대외협력 관련 간담회/총회회관
- (33) 2023. 7. 7. 11:00, 한교연 실행위원회/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
- (34) 2023. 7. 10. 한장총 장로교의 날
- (35) 2023. 7. 17. 14:00, 한장총 다음세대위원회 간담회/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애홀
- (36) 2023. 8. 18. 10:30, 한국장로교 4개 교단(합동, 고신, 대신, 합신) 대외협력 관련 간담회/고신회관



[별첨 1]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대외협력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의 국내 각 정통교단 및 교단 연합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함에 그 목적을 가진다.

제3조(지위)

본 위원회는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제2항에 의거 총회 상설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원칙)

1. 대외협력(교단 연합과 교류)은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교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조직된 연합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2. 대외협력(교단 연합과 교류)을 위한 연합기관의 가입 및 탈퇴는 총회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단, 가입 및 탈퇴의 관련 제반 사항 준비는 본 위원회에서 추진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총회장, 총회 총무
선임직 - 9인(지역 3개 구도에서 각 3인)
2. 위원배정은 지역 3개 구도에서 3인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연합사업 기관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성을 지닌 자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4. 전문위원: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1. 조직: 지도위원 - 1인(직전 총회장)
위 원 장 - 1인(목사) 부위원장 - 2인(목사 1인, 장로1인)
서 기 - 1인 회 계 - 1인
총 무 - 1인

2. 선출: 각 위원 구두 호전에 의해 선출한다.
3.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임 무

제7조(임원 임무)

1. 위 원 장: 본 위원회의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협조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이를 대리하되, 목사, 장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3. 서 기: 안건 상정, 회의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4. 회 계: 본 위원회 재정 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5. 총 무: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연구실행 업무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을 기획 관장하고, 본 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진행사업과 운영을 조정한다.

제8조(위원회 임무)

1. 한국교회 각 교단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
2. 한국교회 각 교단과의 신학 교류 활동
3. 한국교회 각종 연합 행사추진
4. 한국교회 민족통일정책 개발 및 실행
5. 대 정부 사회문제 대책 사업
6. 세계교회 연합 지구촌 문제 공동대처 활동
7. 연합 활동과 관련된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5장 회 의

제9조(회의)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운영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 위원장이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장 재 정

제10조(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 연도에 준하여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재정)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예산: 총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집행하되, 미집행 예산은 차기 회기로 이월 및 적립하여 목적대로 사용한다.
2. 기 부 금: 특수 목적 사업을 위해 총회 내외에서 모금 활동을 펼 수 있으며, 모금된 모든 재정은 총회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2조(집행)

본 위원회 예산 집행은 위원회에서 승인된 항목과 금액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항목 전용 시 재정부의 심의 및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 칙

1. 규정 개정

가. 본 위원회의 규정은 위원회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한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발효

본 규정은 총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2023년 9월 18일 제정

청 원 서

수신: 총회장

참조: 서기

제목: 총회대의협력위원회의 상설위원회로 존치 청원

총회대의협력위원회의 청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총회대의협력위원회는 제107회 총회실행위원회의 허락으로 2022년 11월 22일 조직되었습니다. 역할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총회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명칭으로 위원회는 존재해왔지만 여러 이유로 존폐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대외협력위원회는 교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설기구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등의 대사회적 문제에 있어 우리 교단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합당한 대응을 하려면 연합기구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회기 여러 이유로 위원회가 존폐를 거듭하다 보니 장기적인 전망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인물도 남기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본 교단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도 이미 연합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교단은 1년 단위로 이사를 파송하지 않기에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교단에는 상설위원회(3년조)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단체 안에서의 교단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외협력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존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총대들께서 헤량하여 주셔서 본 교단이 장자교단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연합활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리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교단연합, 기관사업, 대언론문제, 대정부 문제 등에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존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드리나 이다.

2023년 9월

총 회 대 외 협 력 위 원 회

위원장 박 철 수

서 기 이 도 형